

학사 3. 대학원 교과과목 이수 규정

(1988년 03월 03일 제정)
(2000년 02월 21일 개정)
(2001년 01월 20일 개정)
(2001년 06월 11일 개정)
(2002년 11월 06일 개정)
(2004년 09월 10일 개정)
(2007년 02월 02일 개정)
(2008년 12월 01일 개정)
(2016년 06월 15일 개정)
(2021년 09월 17일 개정)
(2022년 05월 30일 개정)
(2023년 03월 24일 개정)

제1조(전공 인정 교과목) 본교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목 중 학부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제2조(교과목 이수규정) 학칙 제69조 및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이수 지침에 준함.

제3조(총 수료 이수학점)

1. 석사과정 : 총 24학점 (전공필수는 12학점) 중 최소한 21학점은 강의(또는 실험) 교과목에 의한 학점으로 취득해야 함.
2.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총 60학점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점 포함) 중 전공필수과목 12학점, 전공분야과목 9학점, 타분야 6학점으로 최소 27학점의 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분야 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자율적으로 이수한다.
전공분야과목, 타분야 교과목의 정의는 제9조 3항 및 4항에 따른다.

제4조(필수 과목) 전공필수 과목으로는 고전역학, 전기역학1, 양자역학1, 통계역학의 4과목(12학점)으로 정하며, [※ 학사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는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됨.] 공통역량교과목으로는 연구윤리의 이해(1학점) 또는 연구 윤리(3학점)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정한다.[개정 2023.3.24.]

제5조 논문연구교과목은 석·박 통합과정에 선발된 학생이나 박사과정 학생만 수강(학기당 한 강좌) 할 수 있다.

제6조 물리학특수연구 과목(I-VI)은 석사과정에서는 1과목 3학점까지만 취득을 인정하고,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의 경우는 대학원논문연구(평점기준 S 및 U) 과목을 합하여 최고 21학점(실험전공의 경우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7조 전공인정과목에 대하여 타대학(또는 타과) 교과목 중 2과목(6학점)까지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그 외에 1과목(3학점)까지 추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수강신청 이전에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석·박사 통산학점 인정 : 석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할 경우는 초과 취득학점은 1학년초(3월중)에 신청에 의하여 통산학점으로 인정한다.

제9조(타교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인정)

- ① 본교 석사·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타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필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인정 승인신청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구두자격시험 지원 시 그 학점을 활용할 수 있다. [※ 승인된 전공필수 과목은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됨]

- ② 대학원위원회는 교과목 내용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학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0조(전공분야과목 및 타분야과목)

- ① 지도교수는 구두자격시험신청서에 학생의 전공분야를 핵입자이론, 핵입자실험, 응집물질이론, 응집물질실험, 원자분자광물리, 통계물리, 생물물리 중 하나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전공분야과목이란 아래 표에서 공통으로 분류된 전기II, 양자II와 구두자격시험신청서에 명시된 학생의 전공분야의 전공 인정 교과목을 말한다. 분야별 전공 인정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③ 타분야 교과목이란 아래 표에서 학생의 전공분야를 제외한 전공분야의 전공 인정 교과목을 말한다.
- ④ 대학원생은 전공분야과목/타분야과목 승인신청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타로 분류된 교과목을 전공과목 혹은 타분야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⑤ 대학원 교과목 외에 학부4학년 교과목 중 상대론과 시공간(핵입자), 핵입자물리학(핵입자), 핵과기본입자(핵입자), 응집물질과 집단현상(응집), 고체의 성질(응집), 고급광학(원자분자광물리), 생물계물리입문(생물물리)을 전공분야 과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타분야 과목으로는 인정한다. 단, 학부졸업학점으로 사용한 경우는 불인정한다.

부칙 (2023. 3. 24)

(경과규정) 이 내규는 2023학년도 후기 신입생 부터 적용한다.

교과목 분류표

분류	교과목
공통	고전, 전기I, 전기II, 양자I, 양자II, 통계
핵입자이론	기본핵 및 입자물리학, 고급장 및 입자이론, 입자물리학, 핵물리학, 일반상대론, 양자장론1&2, 끈이론, 핵입자특강1&2
핵입자실험	기본핵 및 입자물리학, 고급장 및 입자이론, 입자물리학, 핵물리학, 일반상대론, 양자장론1&2, 끈이론, 핵입자특강1&2
응집물질이론	응집물질물리학1&2, 고급응집물질물리학, 응집물질물리특강1&2,
응집물질실험	응집물질물리학1&2, 고급응집물질물리학, 응집물질물리특강1&2, 응용물리특강1&2
원자분자광물리	원자물리학, 레이저물리학
통계물리	복잡계물리, 상전이와 임계현상
생물물리	생물계물리, 복잡계 물리학, 레이저 물리학, 응용물리특강(비평형 통계역학), 응집물질물리특강(생물 물리)
기타	응용물리특강1&2, 응용전산물리, 물리학특강, 고급양자 및 다체계이론, 수리물리학, 고급실험(이론전공의 경우에만 해당), 유체역학(학부), 콜로퀴움 1&2, 대학원 연구입문, 연구윤리
타분야 과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부 과목	상대론과 시공간(핵입자이론/실험 제외), 핵입자물리학(핵입자이론/실험 제외), 고체의 성질(응집물질이론 제외), 고급광학(원자분자광물리 제외), 생물계물리입문(생물물리 제외)

대학원 1. 대학원 입학시험 및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

(1985년 06월 일 제정)
(1990년 10월 29일 개정)
(1993년 06월 29일 개정)
(1996년 05월 22일 개정)
(1998년 11월 10일 개정)
(2000년 07월 28일 개정)
(2000년 09월 22일 개정)
(2003년 06월 04일 개정)
(2004년 09월 10일 개정)
(2007년 02월 02일 개정)
(2008년 12월 01일 개정)
(2010년 07월 02일 개정)
(2011년 01월 07일 개정)
(2013년 10월 21일 개정)
(2016년 10월 31일 개정)
(2019년 11월 25일 개정)
(2021년 09월 17일 개정)

제1조(석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입학시험) ① 전기·후기 모두 서류심사 및 심층 구두 면접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 ② 심층 구두면접은 학생들에게 문제 제시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③ 석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입학시험의 시행 및 전담 관리를 위해 학부장은 매년 대학원석사입시위원회를 구성한다.
- ④ 물리학부 교수회의는 대학원 석사입시 및 자시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입시사정안을 심의·추인한다.

제2조(구두자격시험 및 논문 심사) ① 대학원생은 구두자격시험을 보기 위해 구두자격시험신청서와 5쪽 내외의 학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두자격시험신청서에서 선택한 전공에 따른 전공학점 기준(아래 표)을 만족함으로써 구두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다.

- ② 구두자격시험은 전공분야 지식과 학위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학위 연구 계획을 심사한다.
- ③ 구두자격시험은 매학기 중에 실시한다. 구두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구두자격시험은 매학기 1회 응시할 수 있으며, 총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구두자격시험은 석박통합 4년차 또는 박사과정 3년차 종료까지 통과하여야 한다.
- ⑥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두자격시험 결과보고서 (양식)로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한다.
- ⑦ 구두자격시험 통과자는 1편 이상의 제1저자 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예정 증명도 가능)하였을 때 박사학위논문심사 받을 자격을 얻는다. 단 핵입자이론 및 핵입자실험 전공의 경우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저자인 경우도 제1저자로 인

정한다.

- ⑧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2회 이상의 예심과 종심 및 공개발표로 완결되며, 공개발표 이전까지 한 차례이상 국제학회에서 구두발표 경험이 없는 경우는 공개발표는 영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전공별 구두자격시험 응시요건

전공	응시요건
핵입자이론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핵입자실험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응집물질이론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통계물리	6 과목(전공필수 4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응집물리실험	4 과목(전공필수 2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원자분자광물리	4 과목(전공필수 2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생물물리	4 과목(전공필수 2 + 전공분야과목 2) 평점 평균 3.3 이상

제3조(박사과정 입학시험) ① 전기·후기 모두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지원학생은 박사과정 지도예정 교수의 추천서를 인비로 받아 물리·천문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지도예정 교수와 석사과정 지도교수*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석사과정 지도교수의 추천서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타 대학에서 지원하는 경우 동일학교의 학과 교수면 됨.)

② 교수 추천서 및 기타 학생 제출 자료 (연구논문 등)에 드러난 특출한 자질과 연구에 대한 적성, 분야별 수요 등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③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과 입시 사정안의 기준 작성을 포함한 각종 업무는 매년 대학원 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학원 박사과정 입시관리위원회(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위원회로 대치 가능)가 담당한다. 면접고사 후 입시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추천안을 바탕으로 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부칙 (2010. 7. 2)

제1조 (경과조치) 이 내규 개정당시 이미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자격시험의 통과(Pass)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은 2011년 12월 자격시험까지 통과(Pass)등급을 받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16. 5. 10.)

제1조 본 개정안은 2017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2조 2017년 3월 현재 아직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이 해당과목을 2017년 이전에 수강하였을 경우 본 규정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과목 시험이 면제

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과목의 시험을 2017년부터 다시 두 번까지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구두시험은 2017년 입학생부터 실시한다. 2017년 이전 입학생에게는 이전 규정, 즉 예비심, 종심 포함 본심 3회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칙 (2021. 9. 17.)

제1조 본 개정안은 2022년 1학기 대학원입학생부터 적용된다.